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간정보 분야 국가 자격종목으로 신설된 공간정보융합기능사·산업기사 자격시험이 '23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자격 취득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함

일부 누락된 자격종목 추가 반영,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자격종목 명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재분류 등 공간정보기술자 자격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종목에 신설 및 누락된 종목을 추가하고,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종목을 명시하며, 종목별 직무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의 직무분야에 따라 재분류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2023.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4조제1항관련)

직무 분야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			*도화		*도화	도화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측량			측량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공사진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해양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디자인					(단일)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비고] ‘*’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도화기능장, 지도제작기능장, 지적기능장, 측량기능장, 항공사진기능장, 정보처리기능장, 도화기능사1급(산업기사), 지도제작기능사1급(산업기사), 항공사진기능사1급(산업기사)	1992.03.01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1] 변경 전

국가자격 종목(제4조제1항관련)

구분 \ 등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전자기기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기술	컴퓨터시스템응용기 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디자인			(단일)멀티미디어콘 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
해양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국가자격 종목(제4조제1항관련)

직무 분야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			*도화		*도화	도화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측량			측량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공사진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해양조사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응용				(단일)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비고] ‘*’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도화기능장, 지도제작기능장, 지적기능장, 측량기능장, 항공사진기능장, 정보처리기능장, 도화기능사1급(산업기사), 지도제작기능사1급(산업기사), 항공사진기능사1급(산업기사)	1992.03.01